

특허법·실용신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

1 특허공보 게재 사항 정비 (안 특허법 시행령 제19조)

※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제2항

□ 개정 이유

- 개정 특허법(17.3.1. 시행)에서 기본 서지사항, 선행기술 정보* 등 공보 게재사항 일부를 직접 규정(개정법 제87조제3항)함에 따라,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과 일부 중복되어 정리 필요

* 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 시 활용한 선행기술문헌으로는 특허취소신청이 제한되므로,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특허공보에 게재하게 하도록 법에서 의무화

< 개정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특허공보 게재사항 >

- ▶ 특허권자의 성명·주소,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, 발명자의 성명·주소,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, 등록공고연월일, 요약서
- ▶ 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 시 활용한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

-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가 있는 후 특허가 등록유지된 경우, 정정된 내용을 특허공보에 반영할 필요

* 현재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, 정정심판 및 정정 무효심판에 따라 정정된 내용은 특허공보에 게재(시행령 제19조제2항제11호)

- 특허취소결정을 하려 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, 특허권자는 의견서 제출기간 중 정정청구 가능

□ 개정 내용

- 시행령에 위임된 공보 게재 사항 중 개정법과 중복된 사항 삭제
-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특허권이 정정될 경우(특허법 제132조의3),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

< 특허법 시행령 제19조(안) >

현행
제19조(특허공보) ① (생략)
② 등록특허공보에는 <u>다음 각 호의 사항</u> 을 게재한다.
1. <u>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</u>
가. <u>특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: 성명 및 주소</u>
나. <u>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</u>
2. <u>출원번호·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</u>
3. <u>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</u>
4. <u>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</u>
5. <u>등록공고연월일</u>
6.~ 7. (생략)
8. <u>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·도면 및 요약서(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·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)</u>
9. ~ 10. (생략)
11. <u>법 제133조의2,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</u>
12. (생략)
③ ~ ⑤ (생략)

개정안
제19조(특허공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등록특허공보에는 <u>법 제8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
1. <u>< 삭제 ></u>
2. <u>분류기호</u>
3. <u>< 삭제 ></u>
4. <u>< 삭제 ></u>
5. <u>< 삭제 ></u>
6.~ 7. (현행과 같음)
8.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<u>명세서 및 도면(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)</u>
9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법 제132조의3, 제133조의2,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</u>
1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⇒

□ **개정 효과**

- 중복 기재 사항의 정비에 따른 법령 명확화
- 특허취소신청 중 정정내용 반영을 통해 특허공보의 정확도 제고

2

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 (안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)

※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에서 특허법 시행령 준용

□ 개정 이유

- 전문기관 간 경쟁체계 강화를 위해, 국회 등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확대 및 지정요건 완화 요구 빈번
- 이에 따라,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의 업무*를 하지 않음에도 그 소속기관을 전문기관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의 개선 필요

*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·감정(鑑定) 등

□ 개정 내용

- 임·직원 중 변리사가 있더라도 변리사법 제2조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, 해당 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을 허용

<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(안) >

현 행	개정안
제8조의2(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(생략)	제8조의2(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임·직원 중 「변리사법」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·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가 없을 것	3. 임·직원 중 「변리사법」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·직원을 겸직하는 자 또는 동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겸업하는 자가 없을 것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□ 개정 효과

-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 활성화 및 경쟁체계 강화

3

우선심사 대상 확대 (안 특허법 시행령 제9조)

※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

□ 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*을 유도하기 위해,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 인증제도**를 도입('16.4.)

* 지식재산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 활동

** 지재산 출원·보유건수, 지재산 전담 조직 유무, 선행기술조사 등 지재산 동향 파악, 특허회피설계 실시 여부, R&D 규모 등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

- 이에 따라, 지재산 활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, 신속한 권리 획득 지원 필요

□ 개정 내용

-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

< 특허법 시행령 제9조(안) >

현 행	개정안
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(생략)	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(현행과 같음)
1. ~ 5의3. (생략)	1. ~ 5의3.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⇒ 5의4. 「발명진흥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
6. ~ 12. (생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
□ 개정 효과

-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조기 권리화 지원

4

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 신설 (안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의2)

※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의2

□ 개정 이유

- 특허법 시행규칙(제8조)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
- 최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(법률 제14107호, '16.3.29. 공포)
 - 이에 따라, 행자부는 관련 규정 신설을 요구 ('16.9.)

□ 개정 내용
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등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신설

<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의2(안) >

현 행	개정안
<p>제19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<u>처리</u>)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9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<u>처리 등</u>)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<u>특허청장·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.</u></p>